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I 추진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송부 ○ 디지털정보과-1038(2014.1.27)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신청서 변경 안내
 - 여성가족과-34893(2014.8.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여성가족과-39908(2014.9.1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30 ~ 10.20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사항 : 의견제출 없음

II 개정 내용

- 주요개정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항목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Ⅲ

향후일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4. 11월



구의회

상정

----- 2014. 11월



공포

----- 2014. 12월



시행일

----- 공포일로부

터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